

1. 개정이유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방보행자 안전기준 개선 (안 제53의2조)

후방영상장치 관측영역을 명확히 하고 조향의 구성을 일관성 있게 재정비(제1항에서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종류 규정, 제2항에서 제1항의 장치별 성능기준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된”을 “x축과 평행한 선을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300밀리미터, 2,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 상의 사각형 영역에 설치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후진 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후방의 보행자 감지영역(자동차 좌·우 최외측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250밀리미터부터 1,0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상의 직사각형 영역을 말한다)에 있는 직경 76밀리미터·높이 1,000밀리미터의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의 단속음일 것. 다만, 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연속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나. 차실내의 경고음의 크기는 최소 55데시벨(A) 이상이고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u>설치하여야</u>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해야 한다.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y 방향으로 각각 1,000밀리미터인 지점에서 <u>설치된</u> 직경이 89밀리미터이고 높이가 500밀리미터인 관측봉을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 ----- <u>설치해야</u> -----. ----- ----- 1. ----- ----- ----- ----- <u>x축과 평행한 선을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300밀리미터, 2,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상의 사각형 영역에 설치된</u> ----- ----- -----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보음 발생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가.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 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후방의 보행자 감지영역(자동차 좌·우 최외측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250밀리미터부터 1,0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상의 직사각형 영역을 말한다)에 있는 직경이 76밀리미터이고 높이가 1,000밀리미터인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나. 가목에 따른 경고음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음 일 것

2. 후진 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삭 제>

<삭 제>

1)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의 단속음일 것. 다만, 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연속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차실내의 경고음의 크기는 최소 55데시벨(A) 이상이고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

3. (생 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 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후방의 보행자 감지영역(자동차 좌·우 최외측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250밀리미터부터 1,0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상의 직사각형 영역을 말한다)에 있는 직경 76밀리미터·높이 1,000밀리미터의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화물·특수자동차는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일 것 나. 가목 외의 자동차는 65데시벨(A) 이상 90데시벨(A) 이하일 것 3.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헤르츠 이상 4,000헤르츠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것 4. 경고음의 발생 횟수는 매분 40회 이상 100회 이하일 것 <신 설>	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의 단속음일 것. 다만, 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연속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 나. 차실내의 경고음의 크기는 최소 55데시벨(A) 이상이고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 <삭 제> <삭 제> ③ <중전의 제2항>
---	--